



제426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치원 유아모집시 다자녀 등 우선선발 〉
■ 각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08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유치원 유아모집시 다자녀 등 우선선발	3
【참고자료 1】 유치원 입학 우선모집 관계 법령	10
【참고자료 2】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기준(교육부 지침)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광규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7.

3. 회부연월일 : 2025.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원장은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교육감이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맞춰 교육감은 우선모집 대상 및 순위와 일반모집 대상을 정하여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모집대상과 순위를 정하면서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기타 4순위 이하 우선모집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정 등의 형제·

자매들이 같은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각각 등하교와 유치원 상담 등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 유아들의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 유치원 유아모집시 다자녀 등 우선선발

개정안은 교육감이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입학)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1조(입학)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교육감은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11조¹⁾는 유아의 유치원 입학과 관련하여 유치원 원장이

1)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①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도록 하되,

시·도에서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해당 조례들은 공통적으로 ①모집·선발 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②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선발 요강을 정하여 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며, ③공개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아를 모집·선발하도록 정하고 있음.²⁾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은 우선모집³⁾과 일반모집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데, 먼저 유치원에서 정해진 모집인원 내에서 추첨을 통해 우선모집 대상자를 선발·등록하고, 이후 일반 유아 및 우선모집 탈락자를 대상으로 일반모집으로 유아를 선발함.

2) < 유아의 모집 및 선발 절차 >

- (교육부) 원활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유보통합 포털: 입소·입학 신청 사이트) 사용을 위해 유아모집 일정 등 시·도 안내
-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시·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유치원) 시·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유치원 규칙에 따라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3) 교육부에 따르면, 최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모두 우선모집 대상임

※ 우선모집 접수→ 증빙서류 확인→ 추첨·발표→ 등록→ 일반모집 접수→ 추첨·발표→ 등록→ 추가모집

한편, 우선모집 대상은 시·도별 조례 및 유치원 규칙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유아모집·선발 기본계획’을 통해 정하고, 공통적으로 재원 유아·특수교육대상자와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유아를 각각 최우선 및 1·2·3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한 것임. <참고자료 1: 유치원 입학 우선모집 관계 법령>

【17개 시·도교육청 우선모집 대상】

우선순위	지원 대상	관계 법령
최우선 순위	재원 유아	-
	교육지원청에서 선정·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모집인원 내 10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모집인원의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 (모집인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주: 단, 우선순위(최우선~3순위) 적용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의무 적용(대전, 충남 제외)이나, 사립유치원은 시·도별 의무 혹은 권고사항임

자료: 교육부('25년 17개 시·도교육청 유아모집·선발 기본계획)

또한, 4순위 이하 우선모집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정하여 권고하거나 유치원에서 유치원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자녀, 쌍생아,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부모(형제) 가정, 건강 취약 유아, 한부모 가정, 입양 가정 등을 포함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4순위 이하 우선모집 대상으로 하고 있음.

【시·도교육청별 4순위 이하 다자녀 등 지정·권고 현황】

우선순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다자녀 (2인)	○	○	○	3인	○	○	○	3인	○	○	○	○	○	○	○	○	○
쌍생아	○	○	○	○	○	○	○	○	○	○	○	○	○	○	○	○	○
재학유아 형제·자매	○	○	○	○	○	○	○	○	○	-	○	○	-	○	○	○	○

자료: 교육부('25년 17개 시·도교육청 유아모집·선발 기본계획)

다만,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정의 형제·자매가 같은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등·하교 및 유치원 상담 등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정을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은 유아의 모집·선발과 관련하여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모집·선

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이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과

현행법 체계에서도 시·도교육청은 조례 및 ‘유아모집·선발 기본계획’을 통해서 다자녀 가정,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모집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실익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봄.

【'25년도 전국 유치원 유아모집 접수·선발 결과】

○ 우선모집 접수·선발 결과

우선모집 모집인원(명)	우선모집 접수/선발 현황				
	지원자수	지원건수	1인당 지원건수	경쟁률	선발건수
341,398	152,102	266,587	1.753	1.24:1	151,734

○ 우선모집 자격별 참여현황(희망순 중복지원, 선발 허용)

구 분	1순위 법정저소득층	2순위 국가보훈대상	3순위 북한이탈주민	1~3순위 계	4순위 이하	계
지원자수(명)	1,736	479	75	2,290	150,073	152,102
지원건수(건)	2,867	878	114	3,859	262,728	266,587
선발건수(건)	2,802	802	107	3,711	148,023	151,734
등록자수(명)	1,516	395	65	1,976	107,235	109,230

○ 일반모집 접수·선발 결과

일반모집 모집인원 (명)	일반모집 접수/선발 현황							
	사전접수 현황			본접수 현황			결과	
	지원 자수	지원 건수	1인당 지원건수	지원 자수	지원 건수	1인당 지원건수	지원 자수	선발 자수
237,418	68,328	137,669	2.01	42,993	80,502	1.87	111,321	74,308

자료: 교육부(2025. 3월 기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참고로, '25년도 전국 유치원 유아모집 접수·선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모집 지원자는 152,102명(중복지원 반영)으로 우선모집 모집인원인 341,398명의 44.6% 수준이고, 일반모집 지원자는 111,321명으로 일반모집 모집인원인 237,418명의 46.9% 수준이며,

우선모집 지원자 152,102명 중 1·2·3순위에 해당되는 유아는 2,290명이고, 4순위에 해당하는 유아는 150,073명으로 실질적인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부분 4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보육의 우선 제공’과 관련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1순위로, 동일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형제·자매를 2순위로 정하고 있고,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므로 유치

4)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3. ~ 7. (생략)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4.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6. ~ 9. (생략)

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모집에 있어서 통일적인 입학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가 진행 중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참고자료 2: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기준(교육부 지침)>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육아 지원 및 출산 장려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정 등 형제·자매를 같은 유치원에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등원, 상담 등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자녀,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에 대한 우선선발 기준은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도 조례로 충분히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법률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우선선발을 명시할 경우 향후 유사한 사유로 추가 개정 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유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바와 같이 저출생 관련 개별 법령에 다자녀 등에 대한 우선지원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도 유아모집·선발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법령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자료 1】 유치원 입학 우선모집 관계 법령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①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개정 2010. 3. 24., 2016. 5. 29.>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제16조(시설 우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간병 또는 보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22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제23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1. 9. 15.>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1. 1. 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1. 1. 5., 2023. 3. 28.>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2】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기준(교육부 지침)

< **현행 입소우선순위 기준**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병**을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맞벌이**)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 **2순위:**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형제·자매

◇ **입소우선순위 별도 적용**

-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료: 교육부